

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정관 및 자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성동구청 직장상조회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 및 현행 운영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정관개정

구 분	현행(구)	개정안(신)
회원자격	성동구청 산하에 재직 중인 공무원(공무직 포함)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추가대출 자격	신 설	기존 대출금을 전액상환 후에 추가대출 가능
위원변경	주민생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관리과장	복지정책과장, 공동주택과장, 안전관리과장
사업계획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해 1월까지
사업실적 결 산	3월 이내	다음해 1월까지

□ 자금관리규정

구 분	현행(구)	개정안(신)
전산처리	마그네틱테이프에 백업 관리	전자식 저장장치 등에 백업 관리
대출대상 결정	1. 소액 신청자 2. 장기 근속자	1. 신청서 접수일이 빠른 자 2. 소액 신청자 3. 장기 근속자
대출금상환	전액상환	일시에 전액상환
사업실적 결 산	3월 이내	다음해 1월까지

3. 직장상조회 정관 및 자금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직장상조회 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원) ① 회원은 <u>성동구청 산하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공무직 포함)</u> 으로 한다. 다만 <u>경노무직(일용직 포함)</u> 은 제외한다.	제4조(회원) ①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으로 한다.
② (생략) 1. (생략) 2. 퇴직 3. <u>타 기관 진출 또는 입대로 인한 휴직</u>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2. 퇴직 또는 타 기관 진출 등 3. (삭제)
제8조(대출) ① <u>융자금의 대출 한도는 개인별 최고 3,000만 원으로 하고 100만 원 단위로 대출한다.</u>	제8조(대출) ① <u>대출 한도는-----이며-----.</u> 단, 추가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전액상환한 후에 가능하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감사는 상조회 정관 및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연 1회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1.~2. (현행과 같음) 3. ----- ---. 단, 제22조의 결산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위원 선임) (생략) 1.~2. (생략) 3. 위원(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제14조(위원 선임)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복지정책과장, 공동주택과장, 안전관리과장, -----
제20조(자산의 관리) 상조회장은 정관에 의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u>선량한</u>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산의 관리) ----- ----- <u>성실한</u> -----.
제21조(사업계획) 상조회는 사업계획은 <u>연도 개시 전까지</u>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조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 ----- <u>다음 해 1월까지</u> -----.
제22조(사업실적과 결산)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u>다음 해 3월 이내</u> 에 작성하며, 감사의 결산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조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실적과 결산) ----- ----- 결산은 감사의 결산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u>다음 해 1월까지</u> 상조회장에게 -----.
제24조(결산공고) 상조회는 결산공고는 구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u>각 과.동에 문서에 의한 발송으로</u>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결산공고) ----- -----, <u>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공문발송으로</u> -----.
제26조(청산위원회) 상조회를 청산할 때에는 상조회 재산 및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하고 그 결과를 구보에 <u>공고</u> 한다.	제26조(청산위원회) ----- ----- -----는 <u>결산공고 방식에 따른다.</u>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직장상조회 자금관리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금관리) 자금관리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성동구청 지점)으로 하고 성동구청 직장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한다.	제2조(자금관리) ----- ----- ----- ----- ----- -- <u>계좌를</u> -----.
제3조(출자금 납입, 출금) 1. 출자 1구좌 금액은 1,000원 이상으로 한다. 2.~4. (생략) 5. 출자금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성동구청 직장상조회 정관 12조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 6. 퇴직 및 전출로 인한 회원 탈퇴 시 연 2%의 탈퇴 배당금을 지급한다. 다만, 회원 본인이 사망할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며, 배우자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 중(배우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출자금 납입, 출금) 1. --- <u>1계좌</u> ----- -----. 2.~4. (현행과 같음) 5. ----- ---- <u>상조회 정관 제12조에</u> ----- -----. 6. ----- -----, ----- <u>사망한 경우 가족 중 1인이 출자금을 출금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u>
제5조(전산처리) 전산입력 자료는 일계표, 잔액시산표, 출자금검산장, 대출금검산장을 출력하여 결제 보관하고, 데이터는 오류방지	제5조(전산처리) ----- -----, -----, ----- --, ----- -----, -----

를 위하여 마그네틱테이프에 백업 관리한다.

제7조(대출금 대상자 결정)

(생략)

1. 소액 신청자
2. 장기 근속자

제8조(대출금 상환)

1. 대출 상환금은 용자 원리금 상환 분납표에 의해 매월 봉급에서 자동공제하며,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단 전액상환)

2. 대출금리는 연 2.9%로 하되 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자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9조(대출금 상환 책임)

1. (생략)

2. 대출금 상환 중에 회원이 퇴직 또는 성동구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되면 대출금 상환잔액을 1월 이내에 상환한다.

3. 퇴직자(휴직자 포함)에 대한 융자금 잔액은 일시 상환한다.

4. (생략)

- 위하여 전자식 저장장치 등에 -----.

제7조(대출금 대상자 결정)

(현행과 같음)

1. 신청서 접수일이 빠른 자
2. 소액 신청자
3. 장기 근속자

제8조(대출금 상환)

1. -----

-. (단, 일시에 전액상환만 가능)

2. -----

----- . 단, -----
-----.

제9조(대출금 상환 책임)

1. (현행과 같음)

2. -----

----- 1개월
-----.

3. -----
----- 일시에 전액 ---.

4. (현행과 같음)

5. 제2호의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그 다음날에 상환기간을 1월 연장하여 독촉을 고지한다. 연장기간 내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다시 두어 재 독촉고지와 함께 압류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조회 담당자는 최종 기간 경과 후 대출 미상환자의 봉급 또는 재산에 압류 조치 할 수 있다.

5. -----

----- 1
개월 ----- . ---

----- 1개월의 -----
----- . -----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